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이슈

2019. 07.05

김상태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KMR. This document provides an outline of a presentation and is incomplete without the accompanying oral commentary and discussion.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Contents

I. 배출권의 개요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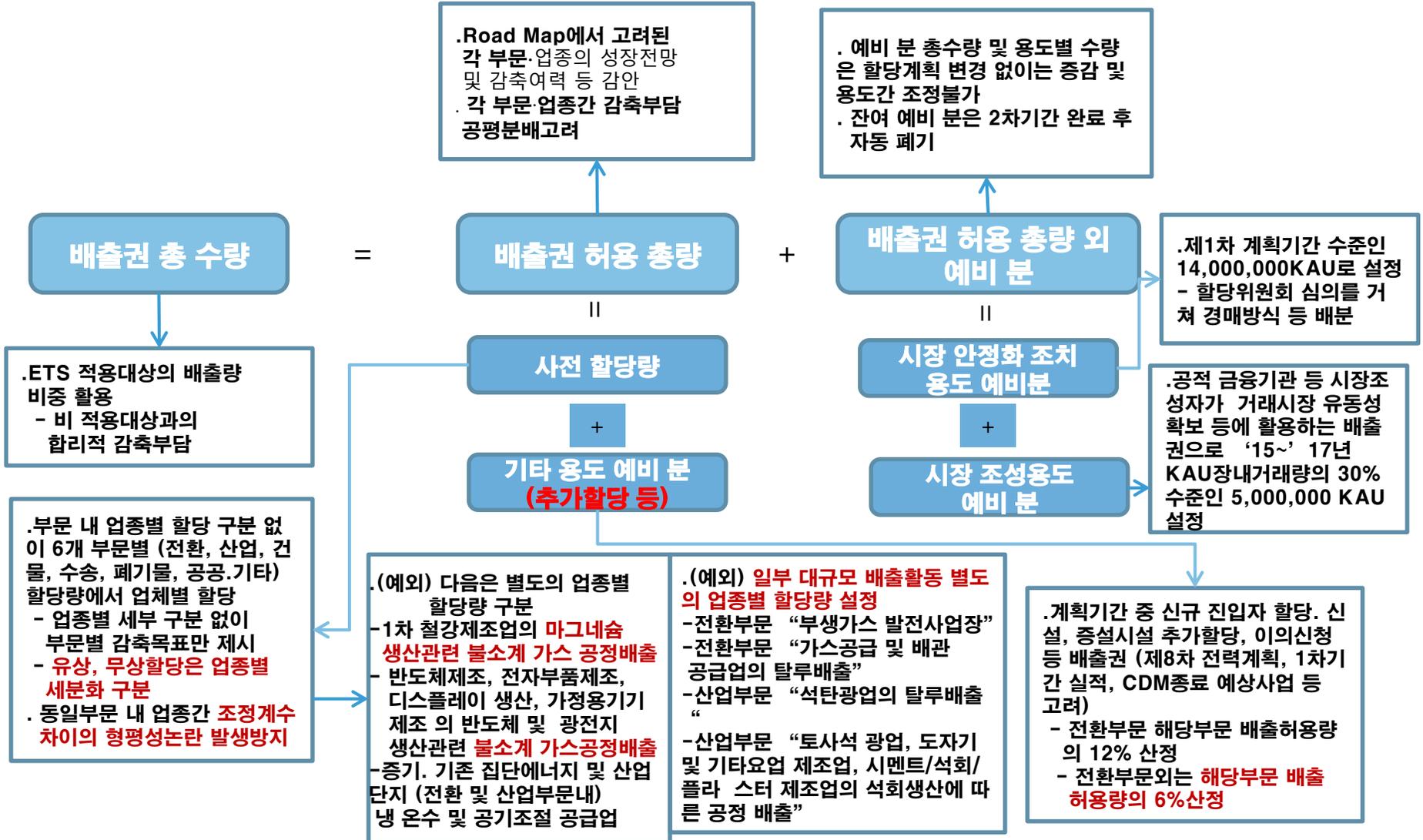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I. 배출권의 개요

배출권 세부내용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1. 개념 :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계획기간 중 할당업체단위로 배분

2. 할당체계 : 사전할당 + 추가할당



- ✓최소산정단위 : 16년도 명세서 산정, 보고, 검증된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 ✓소량배출사업장 (3000톤 CO₂-eq) 미만 은 사업장 단위로, 소규모 배출시설(100톤CO₂-eq 미만)은 시설군 단위로 관리 가능
- ✓2차 계획기간의 기준연도 : 2014~2016년

3. 할당체계 : GF방식(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 BM방식(제품생산량당 배출량지표)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방식

GF할당방식

- 기준연도(14~16년)의 업체의 기존시설 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
- BM할당방식 적용시설 이외의 부분에 적용

BM할당방식

- BM경계부분에 대해 단위 활동자료당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BM계수를 기준으로 할당
- BM계수 : 동종 BM경계 내 평균 배출집약도로 산정
단, LNG복합발전은 해당시설들의 온실가스배출량 중위 값 적용 (친환경발전 유도목적)

BM계수

부문	업종	BM 경계	BM 계수
전환	전기업(KSIC 코드 : 351)	석탄기력 발전시설	0.88697696 tCO ₂ eq/MWh
		LNG 복합 발전시설	0.388902374 tCO ₂ eq/MWh
		중유 기력 발전시설	0.658801 tCO ₂ eq/MWh
		LNG 복합 열병합 발전시설	0.0432676 tCO ₂ eq/GJ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KSIC 코드 : 353)	LNG 복합 열병합 발전시설	0.041978863 tCO ₂ eq/GJ
산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KSIC 코드 : 353)	석탄 기력 열병합 발전시설	0.10817603 tCO ₂ eq/GJ
	석유 정제품 제조업(KSIC 코드 : 192)	석유정제시설	0.003652499 tCO ₂ eq/CWB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KSIC 코드 : 2331)	회색클링커 소성시설	0.29571898 tCO ₂ eq/ton
수송	정기 항공 운송업(KSIC 코드 : 511)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제주 노선	0.001654655 tCO ₂ eq/ton-km
		민간항공기 국내 운항시설 중 내륙 노선	0.002531026 tCO ₂ eq/ton-km
폐기물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KSIC 코드 : 370), 폐기물 처리업(KSIC 코드 : 381)	하수처리시설	0.51734 tCO ₂ eq/ton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배출권 할당 산정대상(2차계획기간)

대상

- 1) 할당대상업체 기준연도 마지막연도(16년) 명세서에 보고된 기존시설 전체
- 2) '14년 새롭게 배출량 보고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출량 산정방식이 변경된 사항도 할당 대상에 포함
 - 석탄 채굴, 처리 및 저장 등 탈루성 온실가스배출
 - 식각, 증착시설의 N₂O사용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
 - 하폐수 처리 등에 대한 배출계수 변화 등

배출권 할당 제외시설 (배출량 보고 및 명세서 제출대상에는 포함)

- 1) 2차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 CDM사업시행 배출시설
 - * CDM사업이 기준연도 이전 또는 기준연도 중 공식종료 (사업기간 만료+ UN 사업철회승인) 경우
 - 종료일 다음날에 해당시설이 신설된 것으로 취급 → 할당량 산정 및 배출권 제출대상에 포함
 - * CDM사업이 계획기간 직전연도(2개 직전연도의 마지막 날포함, 2017년) 또는 계획기간 중 공식종료
 - 종료일 다음날 해당시설이 신설된 것으로 취급 → 추가 할당량 신청 및 배출권 제출대상에 포함
 - * 추가할당 신청경우 : CDM 부분 배출량과 사업종료연도의 CDM사업 시행 전후의 배출량 구분하여 검증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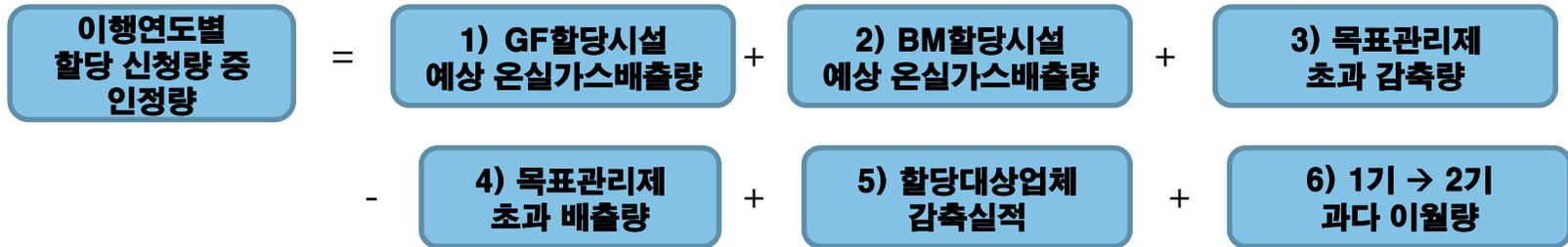
2)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합량별 CO₂직접배출량 등 업체의 총배출량에서 제외되는 배출량

- 3) 다음의 배출활동
 - 산업부문 내 석유 정제품 제조업의 석유정제활동 (수소제조, 촉매재생)
 - 명세서 보고되나 총 배출량에 합산되지 않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사용 (단, 전기사업자 업체의 총 배출량 합산에 포함되므로 산정 및 제출대상에 포함)

- 4) 폐 가스 소각시설 중 Flare Stack에서 발생된 기상폐기물의 배출량
 - * 명세서 상 배출시설 중 Flare Stack 기상폐기물 배출량 부분을 구분하여 검증 후 할당 제외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기준



1) GF할당시설 : ETS전력배출계수와 로드맵 상 전력배출계수 간의 차이 보정
 →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시 해당 간접배출량과 관련한 할증률 적용

2) BM할당시설 : ETS전력배출계수와 로드맵 상 전력배출계수 간의 차이 보정
 → BM계수에 해당 간접배출량과 관련한 할증률 적용
 * GM, BM할당방식에 따라 산정한 값 중에 큰 값 적용가능

3), 4) 목표관리제 초과 감축 및 배출량의 제외사항
 - 1차 기간 조기감축실적 인정 시 고려된 실적
 - 외부감축실적으로 승인된 초과감축량
 - 1차 기간의 할당량산정시 고려된 실적은 제외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Ⅲ.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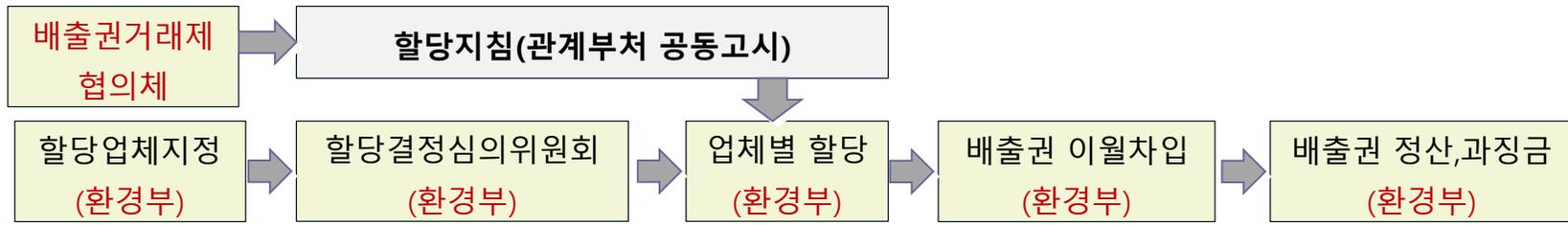
1. 배출권 거래제 총괄 및 운영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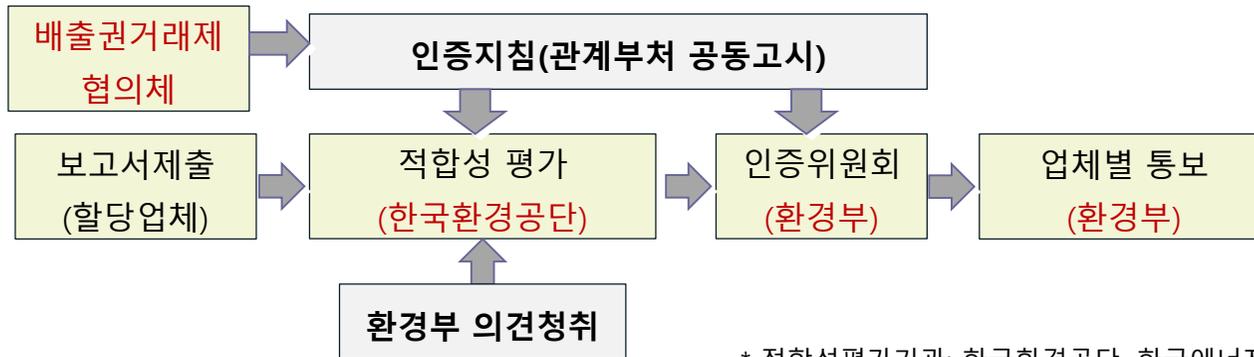
Ⅲ.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2. 배출거래제 절차

1) 배출권 할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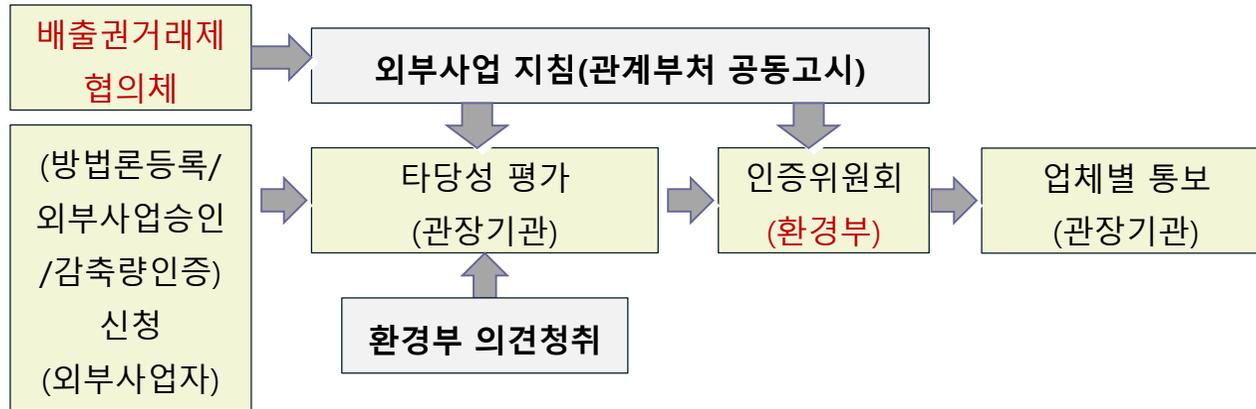
2) 배출량 인증 절차



* 적합성평가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농업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Ⅲ.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3) 외부사업 승인 절차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주요 내용

-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 절차, 범위,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2)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사전검토,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3) 명세서의 작성, 제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 배출량의 인증기준, 적합성평가의 방법 및 결과보고, 인증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에 대한 조항 주요내용

제33조	▪ 배출량의 인증기준	제37조	▪ 배출량의 인증 및 통보
제34조	▪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제38조	▪ 이의 신청
제35조	▪ 적합성평가 결과의 보고	제39조	▪ 제3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제36조	▪ 적합성평가 결과의 의견청취 및 반영(삭제)	제40조	▪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환경부 고시 제2018-73호 2018. 5. 3>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

2. 적합성 평가항목

- **적합성 평가는 모든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합성 평가기관(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 실시요청을 받으면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를 승인하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적합성 평가항목

1	▪ 명세서 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 가능성	6	▪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
2	▪ 명세서 상 배출계수(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포함)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7	▪ 이의 신청
3	▪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여부	8	▪ 타당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4	▪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여부	9	▪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 조직 경계 내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		

명세서 적합성 평가 주요 평가항목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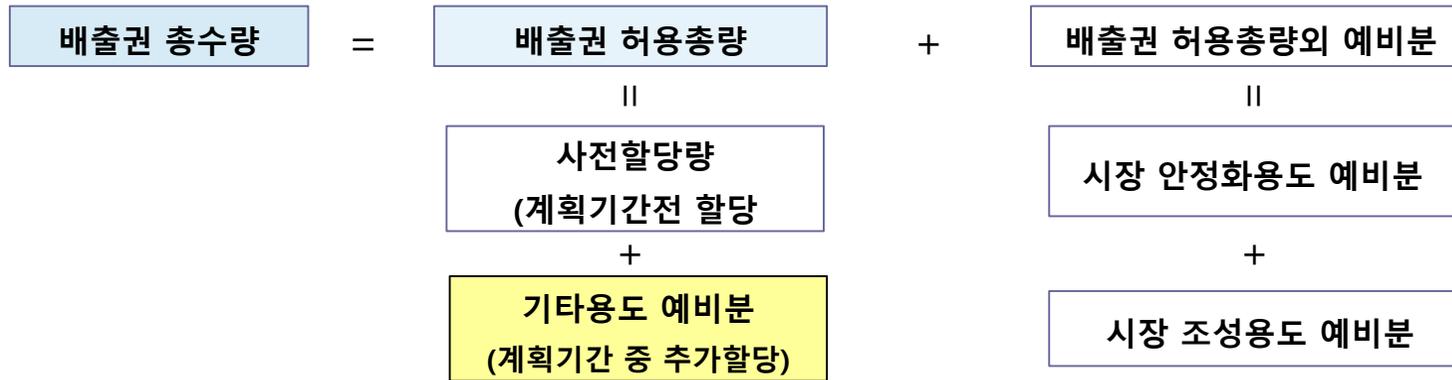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1. 추가할당이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및 증설, 생산품목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배출권의 추가할당이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해당부문의 기타용도예비분으로 배분하는것**



2.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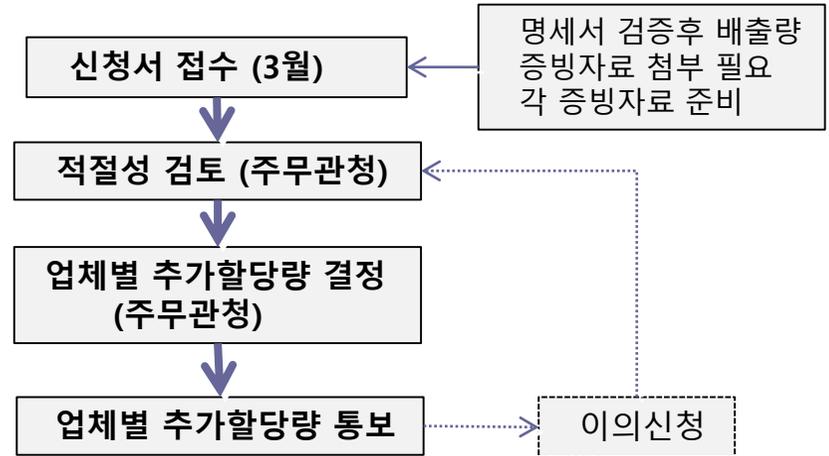
- 1 계획기간중 시설 **신설 및 증설**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 2017년 이후
- 2 계획기간중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일부사업장 및 시설양수.합병** : 2017년 이후
- 3 계획기간중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업체의 **생산품목.사업계획변경** : 2017년 이후
* 업체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30%이상** 증가시, 증가량에 대해 최대 50%인정
- 4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
- 5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추가운항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2.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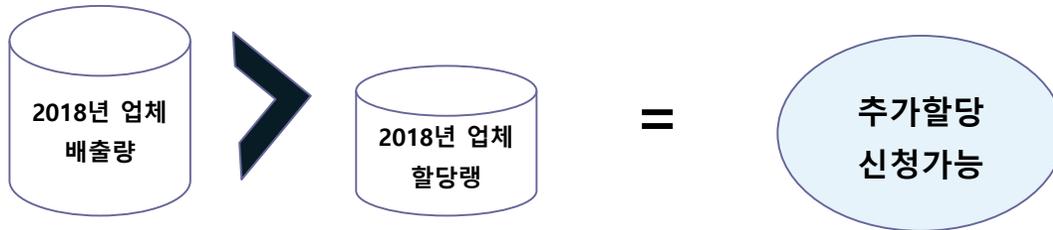
- 6 대중교통수단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조치
- 7 화석연료대신 가연성폐기물 활용
- 8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른 열공급 증가
- 9 할당대상업체로 부터 권리와 의무승계

3. 추가할당 절차



4. 추가할당 신청기준 (전제조건)

$$\text{이행연도 업체배출량} + \text{이행연도 업체 내부감축실적} > \text{이행연도 할당량(할당 배출권)}$$



단, 제약발전, 항공기 안전 추가운항, 권리의무승계의 경우 해당없음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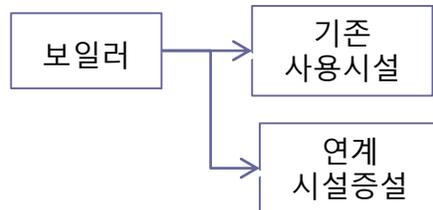
5. 신청기준 주요 세부사항

1 계획기간중 시설 **신설 및 증설**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 2017년 이후

1) 신설

-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배출활동 → 명세서에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
- 물리적 추가없이 기준연도중 **폐쇄시설로 배출권할당받지 않은 시설 재가동경우** 포함 ('18.7 개정)
- **배출활동 추가** 및 변경신설 인정 ('18.7개정)
 - "신설"에 대한 정의 변경으로 산정대상 배출활동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개조전의배출시설이 폐쇄되고 개조이후의배출시설이 신설된것으로 인정 (정부인정필수 : 연료변경 등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정불가 등)
 - 배출활동의 신설(연료추가)등에 대해 모니터링계획서 (조직경계, 배출시설정보, 기타참고사항), 명세서(조직경계, 배출시설 및 활동자료 변동현황, 기타참고사항)에 기재하고 추가할당 신청 고려필요

2) 연계시설 신.증설에 따른 전기/열 생산설비 증설인정 ('18. 7개정)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5. 신청기준 주요 세부사항

1) 계획기간중 시설 **신설 및 증설**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 2017년 이후

2) 증설

- 기존시설의 물리적 변경 → 설계용량 10%이상 증가경우

; 연계시설포함하여 물리적 용량증가로 기존시설의 온실가스배출량이 할당시 결정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배출량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포함

2) 계획기간중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일부사업장 및 시설양수.합병** : 2017년 이후

1) 할당대상업체가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시설 양수.합병

2)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할당업체의 비할당대상 사업장이나 시설을 양수.합병

3) 계획기간중 (계획기간 시작직전년도 1년 포함) 업체의 **생산품목.사업계획변경** : 2017년 이후

* 업체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30%이상** 증가시

1) 기준 :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및 사업계획의 변경 발생경우

- 단, 시설 신설.증설. 일부사업장 양수.합병은 제외

2) 2017년 이후

3) 배출량이 30%이상 증가시 해당. 할당량은 증가량에 조정계수 x 50%이내 인정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5. 신청기준 주요 세부사항

4 계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

5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추가운항

7 화석연료대신 가연성폐기물 활용

- 1) 2018년 가연성폐기물 활용
- 2) 해다사유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감축에 기여한 경우 인정

8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른 열공급 증가

9 할당대상업체로 부터 권리와 의무승계

- 1) 할당대상업체로 부터 권리의무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경우
- 2) 신증설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할당 신청

6. 추가할당량 결정 산정

1) 신증설 : 배출량 증가량에 대해 배출량 증가분 산정하여 조정계수 적용 (확정된 조정계수보다적게 적용가능)

2) 생산품목, 사업계획변경 : 증가분 산정하여 조정계수 적용 후 50/100이내 범위에서 추가할당

3) 가연성폐기물 활용 : (가연성 폐기물 활용 해당이행연도 배출량 - 가연성폐기물 활용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조정계수 적용

4) 기타 : 증가량에 조정계수 적용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7. 유의사항

- 1) 조정계수 : 사전할당시 확정된 조정계수 사용
 - 예비분 운영상황고려하여 적은 값 적용가능
- 2) CDM사업의 공식종료시 추가할당 신청 가능
 - 종료일 다음날 신설로 취급날 (2016년 12월31일 종료사업부터 추가할당 신청대상)
- 3) 사전할당과 동일방식 추가할당
 - GF방식/ BM방식 동일적용
- 4) 유상할당경우 추가할당시 유상할당분(3%) 차감
- 5) 생산품목변경 또는 사업계획변경 : 배출량 증가가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발생시 검토가능

8. 준비사항

- 1)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 명세서 배출량 입증자료 (검증후)
 - 해당시설 설계용량증빙자료 (설비사양서, 명판, 투자품의자료 등)
 - 가동개시일, 변경일 증빙자료 (연료고지서, 투자품의서, 계약서, 설치 및 시운전보고서 등)
 - 할당량 통보서
 - 양수합병시 계약서 및 양수합병 정보
 -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변경시 : 검증보고서, 입증서식, 사업계획서 및 공문서, 통보서 및 관련서류 등
- 2) 추가할당 신청후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협의 및 보완요구자료 대응 필요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9. 할당취소의 고려사항

(할당취소의 사유)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1.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미가동"이라 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이하 "가동정지"라 한다)
4.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

(할당취소 사유인 미가동의 기준)

1.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시설의 가동 예정일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 정당한 사유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할당취소 사유인 가동정지의 기준)

1.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2. 일부 시설을 1년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3.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 * 시설의 정기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은 가동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VI. 이월 및 차입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월·차입의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①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차 이행연도)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의 차입 불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제36조(배출권의 차입)

-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8. 9., 2017. 12. 29.>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예시)

- 2018, 2019, 2020년 연도별 배출권(할당량) : 50,000톤
- 2018년 배출량 : 55,000 톤
- 2018년 차입가능 배출량(배출권의 15%한도) : 7,500톤
- 2018년 차입한 배출권 : 5000톤(10%)
- 2019년 차입가능 배출권
= (직전기간 배출권차입한도15%) 7,500 - 2500(차입한 배출권 비율 10% x 50/100) = 5,000톤 (5%)
- * 즉 차입한도15%에서 실제차입비율의 50%를 제외한 비율로 차입 가능함.

VI. 이월 및 차입

2.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이월·차입기준

1) 계획기간 내 이월

할당대상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이행 연도 간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그 수량과 관계없이 승인하고, 제2차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

2) 계획기간 간 이월

할당대상업체의 제3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하고, 제3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만 이월

① 해당 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

*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을 할당 받은 날부터 제3차 계획 기간으로의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순매도량 (매도량 - 매수량) ÷ 해당 업체가 적용 받은 제2차 계획기간의 이행연도 수

②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 tCO₂-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2.5만 KAU, 2.5만 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5천 KAU**

3) (미 이월 배출권의 처리)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법 제32조, 영 제28조 제5항)

VI. 이월 및 차입

3.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주요내용 - 이월·차입 기준 변경 등 (19. 06 변경)

구분	내용
공청회 주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일자	2019년 5월 21일(화) 10:00 ~ 12:00
배출권 사전 할당량	제1차 이행연도 57,219 tCO ₂ eq (2018년) 제2차 이행연도 53,864 tCO ₂ eq (2019년)
문제 상황	차입과 장외거래 등 과도한 배출권 수요가 시장 유동성 악화
변경(안) 내용	할당 기업의 배출권 이월량 일부 제한 (이월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
예외 조건	1차 이행연도에 한해 거래, 유상할당된 배출권 이월 가능 계획 확정 이전 매수량, 순매도량 산정에서 제외

구분	배출권 부족업체	배출권 여유업체	시장 전체
업체 수(개)	190	400	590
물량(만 톤)	-1,357	4,628	3,271

<주요 내용>

- 기업의 순매도량 기준 이월량을 산정기준 추가
- 배출권 물량 이월 기준의 일부 제한
- '18년 배출권 순매도량 (매도량-매수량) 3배, '19년 배출권 2배만큼 이월 가능
- 기업의 이월량을 제한함으로써 배출권 매도 유도
- 이월 및 차입 신청 기간을 8월 말~9월로 변경
- 배출권 제출 기한도 9월 말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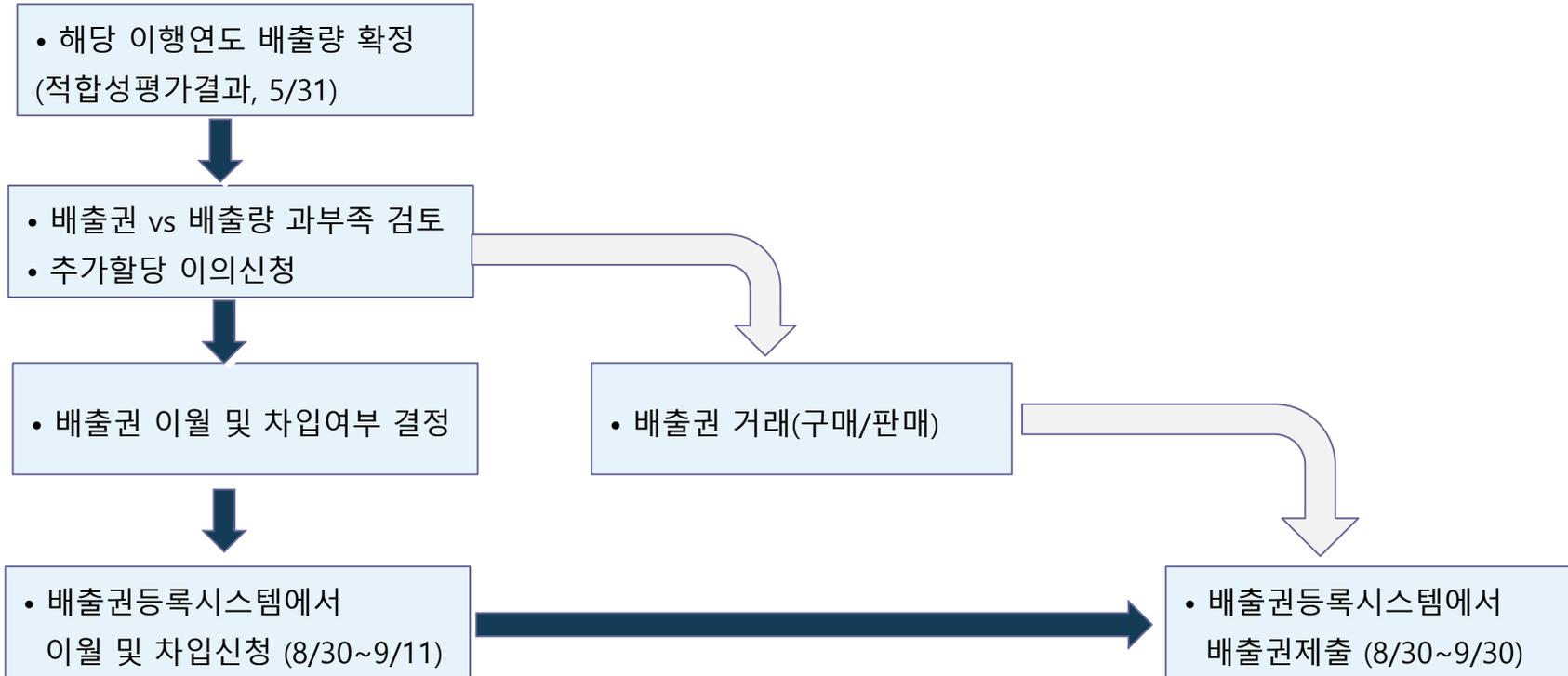
VI. 이월 및 차입

18년도 배출권 이월·차입의 제한

- **(이월)** 다음의 기준(i ~ iii) 중 **큰 값의 범위에서 이월을 승인**하고,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로 이월
 - i)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 *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해당업체에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2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 '매도량 - 매수량(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
단, ① 할당계획 변경안 확정(6.7 예정) 이전의 매수량은 제한 없이 이월 가능,
② 순매도량 계산 시 할당계획 변경안 확정(6.7 예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 배출권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배출권의 매수·매도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때 효력 발생
 - ii)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 tCO₂-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7.5만 KAU**,
 - iii) 2.5만 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5천 KAU**
- **(차입)** 해당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에서 차입을 승인하고,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에서 차입

VI. 이월 및 차입

4. 이월 차입 및 배출권 제출절차 (19. 06 변경 기준)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참조 1. 배출권 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1. 사업개요

구분	핵심 내용
1. 관련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최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 연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 실적(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의 감축 실적 제외) 중 해당 계획기간 2개 직전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 연도에 발생한 감축실적 및 해당 계획기간 직전 계획기간(마지막 이행연도 제외)에 발생한 감축실적
2. 대상 기간	2017년 ~ 2019년 (3차 계획기간 인정)
3. 대상 사업	조직경계 내에서 사업 투자 시행이 결의되어 감축실적이 발생한 사업으로 이행실적을 갖고 있는 감축 사업
4. 검증 여부	검증 필요(검증 10~15일 소요됨, 이를 고려하여 20년 7월 까지 검증신청필요)
5. 사업 유형	1) 감축 인정 가능성 높은 유형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료전환 사업, 바이오 매스 사업, F 가스 처리기술 도입 고효율 설비 도입 사업 등 2) 감축 인정 가능성 낮은 유형 - CDM 등의 표준화 방법론과 같이 기타 설계 값 등을 이용하여 제3자가 감축량을 인정할 수 있는 기술적 추가성이 명확한 사업 중 감축량이 큰 사업 - 방법론은 없으나 제 3자가 기술적 추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용 기술이 도입되어 에너지 진단 등의 사업으로 정부가 인정한 실적이 있는 사업
6. 검증 절차	1) 문서 검토 → 2) 현장 검증 → 3) 확인 심사 → 4) 감축 검증 보고서 작성
7. 컨설팅 절차	1) 감축사업 검토 → 2) 자료 수집 → 3) 제반서류 작성 → 4) 검증 대응

* 감축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증 대응 등의 컨설팅에 대해서 별도계약에 의한 진행필요

* 추가적 3자 검증은 별도 검증기관과 계약필요

참조 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2. 사업 수행 시 준비사항

- 1) 감축활동 전후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여부
- 2) 감축활동과 관련된 제반 서류 확보
: 시공계약서, 내부 품의서, 그 외 감축보고서에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등
- 3)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증
*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Contents

- I. 배출권의 개요
- II. 업체별 배출권 할당체계
- III. 배출권 할당 및 인정절차
- IV. 배출권거래제 적합성 평가
- V.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VI. 이월 및 차입

참조1.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실적사업

참조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참조 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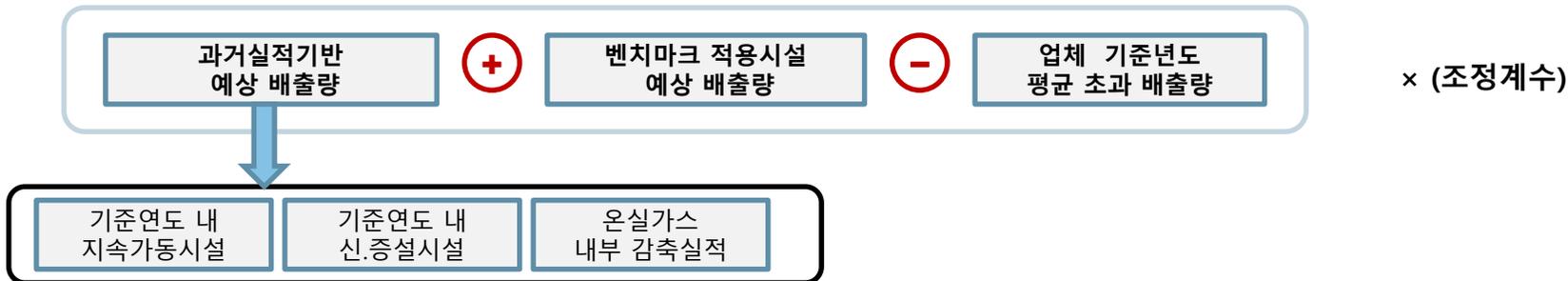
1. 할당신청 일정 및 주요 변경사항

- 신증설 시설(2020, 2021, 2022년) 등에 대한 할당은 추가할당으로 진행
 → 매 이행연도 종료후 3월까지 추가할당 시에 일괄 반영
 * 신 증설 및 생산량 증대에 따른 할당량 조정 (실적Base로 할당량 배분)

2. 제 3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할당 산정 기본체제

구분		산정 대상
3차 계획기간		2021년 ~ 2025년 (5년)
사전할당 (할당신청서 제출 시)		. 기준연도(2017~2019년) 기존시설 . 2기 (2017~2019년) 신설, 증설시설
사후조정	추가할당	2020년 1월1일 이후 신설.증설시설
	할당취소	할당 받은 시설이 1년 이상 가동정지 경우 등

3. 제 3차 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방법



참조 2. 제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관련

4. 3기 사전할당을 위한 검증대상 (검증기관)

1) 기준기간(17~19년) 신.증설 시설 중에 2018년 3개월 이상 월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을 적용할 경우

신.증설시기	산정대상	검증대상
2017년	A : 2018년, 2019년 연평균배출량 B : 2020년 3개월 이상 월 평균배출량 (A가 B보다 50% 이하 시 B선택 가능) * 즉, 2018, 2019년 신/증설설비의 가동이 매우 낮을 시 기준배출량으로 적용되는 문제의 해소방안	B 선택 시 2020년 3개월 이상 월평균 연간 배출량
2018년	A : 2019년 연평균배출량 B : 2020년 3개월 이상 월 평균배출량 (A가 B보다 50% 이하 시 B선택 가능)	
2019년	A : 2019년 월평균배출량 B : 2020년 3개월 이상 월 평균배출량 - 2019년의 가동 개시 이후 기간이 3개월 이내 - A가 B보다 50% 이하 시 B선택 가능	

2) 2017년~2019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단, 2014년 1월1일 이후 투자사업)



감사합니다